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9. 17.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 9. 1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종근 교육국장)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공포, 2007. 3. 23. 시행) 및 같은 법률 시행령(2007. 3. 23.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분리,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2조)

-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최저 한도액을 정함
- (2) 학원 수강생들의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책무규정을 신설함.

나.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안 제2조의3)

- (1)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제곱미터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함.
- (2)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0.8인 이하로 하고, 좌석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함.
- (3)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실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4)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함
- (5)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안 제2조의4)

- (1)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규모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안 제2조의5)

- (1)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고액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함
- (2)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 설정(안 별표3)
- (3)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 또는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담당인력 1인 이상(남,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 함.

마.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안 제2조의6)

- (1)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2)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안 제4조)

- (1) 법 제16조제2항에의거 교습시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시간을 현재 23:00에서 24:00까지로 완화함.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본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원 운영자의 책무규정을 비롯한 학원 시설의 기준,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 및 제한,

그리고, 교습시간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수강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각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 시설의 기준과 설정에 대한 근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현황,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의 근거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2항3)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학부모와 학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여부, 타 시도의 교습시간 추진현황,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야교습시간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22:0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각 시도

3)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감독 등)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6.9.22>

의회 및 교육청에 요청한바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에 한해 24:00시 까지 연장이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제5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②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2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3과 같이 한다.”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공

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중 "(학원의 교습시간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제1항중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를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를 각각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강료 등)”을 “(수강료 등 금액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5조”를 “영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설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항중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보충학습 설립·등록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2년간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제2조의4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시지역 150㎡ 이상 기타지역 90㎡ 이상	
			기숙학원	별표 3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보충학습	시지역 90㎡ 이상 기타지역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어학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서실		시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별표2와 같음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60㎡ 이상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 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안전관리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60㎡이상		
		일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60㎡이상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별표 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클씨, 부기, 속셈, 속독	60㎡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성인고시	90㎡이상	
		기예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별표 2와 같음	
응변, 화술	60㎡이상					
독서실		독서실	시지역 120㎡이상 기타지역 60㎡이상			

※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통교과를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 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 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별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2조의4제3항 관련)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예 능	예 능	1. 음 악	가. 시 설 (1) 음악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필요한 악기 6대 이상	
			2. 미 술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 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무 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탈의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특수교육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 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1. 기 계	가. 시 설 (1) 설계실 : 60㎡ 이상 (2) 실습공장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자동차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정비실습실 : 60㎡ 이상 (3)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젤기관 2대 이상 (3) 가솔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 중기운전)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운전실습장 : 990㎡ 이상 (3) 기재실 : 16.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배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 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기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3. 금 속 (귀금속 가공)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기재실 : 15㎡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 기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전기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우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 신 (6-1. 유·무 선통신)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파일통합장치 1대 이상 (2) 하드디스크 2GB이상 컴퓨터 1대이상 (3)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4)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5) 업무용 통신 프로그램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 신 (6-2. 유·무 선설비)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뎀(MODEM) 1대 이상 (2)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주파수 발전기 1대 이상 (5) 회로시험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 자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기재실 : 1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재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바) 시그올레트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피던스브릿쉬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점 이상 (2) 텔레비전과정 (가) “ (1) ”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3) 컴퓨터기기과정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비디오과정 (가) “ (1)”,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항 공 (항공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정비실습실 : 60㎡ 이상 (3)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 공 기 (가) 고정의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2) 엔 진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토목,건축	가. 시 설 (1) 설계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1,양재· 한복)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2)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4)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2,수예· 자수)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이상 (2) 수예, 순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광 업 자 원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2) 화약 및 발파작업 구(진동측정기, 발파기, 누설 전류측정기 등)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농 립 (동 물)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해 양	가.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2)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① 정박계선기구(양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④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에너지	가. 시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환 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가. 시 설 (1) 강의실 : 30m ² 이상 (2) 실습실 : 60m ² 이상 (3) 기재실 : 3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1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1대 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공 예 (16-1,공예· 도예)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공 예 (16-2,보석 감정)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감정과정 (가)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나) 굴절계 1인당 1대 (다) 정밀저울 3인당 1대 (라) 전자저울 3인당 1대 (마) 분광기 2인당 1대 (바) 자외선기 2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안전관리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 용기술	18. 디자인 (18-1,패션 디자인)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디자인 (18-2,산업 디자인)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2인당 1대이상 (3) 컴퓨터디자인과정 (가)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대 이상 (나) 스캐너 1대 이상 (다) 칼라프린터 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 용기술		(라) 플로터 1대 이상 (마) VTR 1대 이상 (바) TV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이·미용 (19-1,미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마네킹(고정대 포함), 미용 의자, 화장대 각 10조 이상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0 이상 (4) 대형거울 2개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이·미용 (19-2,이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칸, 면도, 가위 각 10대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식 음 료 품 (20-1,조리)	가. 시 설 (1) 조리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250ℓ 이상) 2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 용기술		(3) 환풍기 2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식음료품 (20-2,제과 제빵)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시청각교구 세트(TV, VTR, 슬라이드) (2) 수직형믹스 중형 2대 이상 (3) 오븐(LPG 또는 전기)2장 용량1대 이상 (4) 수평반죽기 중형 2대이상 (5) 발효실(LPG 또는 전기) 40장 용량 1대 이상 (6) 추저울(5kg) 6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습도계, 온도계 각 4대이상 (9) 로라(Dough Sheeter)1대 이상 (10)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1) 양금믹서(중형) 1대 이상 (12) 찜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식음료품 (20-3,조주)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 용기술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인 쇄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및 기타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사 진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2) 암실 : 5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피아노 조율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4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4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4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 업 서비스	24. 숙 기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 업 서비스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인 1대 (2) 속기용 키보드 1인 1대 (3) 프로그램 10종 이상 (4) 고속입력기 1인 1대 (5) 프린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전 산 회 계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인 1대 (2) 프로그램 1인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전 자 상 거래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서버용 컴퓨터 1대 이상 (2) 컴퓨터 1인 1대 (3) 프로그램 1인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텔 레 마케팅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MFC전화기 1인 1대 (2) 유무선 헤드폰 1인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일 반 서비스	28. 애 견 미 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미용테이블(일시수용인원)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일 반 서비스		(2) 목욕시설 1조 이상 (3) 미용도구 (가) 클리퍼 (나) 가 위 (다) 브러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장 의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0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10세트 이상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호 스펀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 대 2조 이상 (2) 휠체어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항 공 승무원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여객기객실 Mock-up(좌석 20좌) 1set 이상 (2) 항공용 구명동의 20조 이상 (3) 항공용 산소마스트 20조 이상 (4) Catering Cart 4조 이상 (5) 여객기용 alley(주방시스템) 1조 이상 (6) 여객기용 Lavatory(화장실) 1조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컴퓨터	32. 컴퓨터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PentiumⅣ이상) 1인당 1대 (2)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계 임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인 1대 (2) 프로그램 6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로 봇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용 탁자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5. 정 보 처 리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PentiumⅢ이상) 20대 이상 (2)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3)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4)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대 이상 (5) 출력을 위한 프린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컴퓨터	36. 통신기기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컴퓨터 2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표준발전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인터넷, 소프트웨어	가. 시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PentiumIV이상) 20대 이상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문화 관광	38. 출 판	가. 시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 영 상, 음 반	가. 시 설 (1) 강의실 : 30m ² 이상 (2) 실습실 : 60m ²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Set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영 화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 10㎡이상 (나) 녹음실 : 15㎡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무대장치, 조 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방 송	가. 공통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UN IT) 1대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 동기신호발생기(SYNGENE RATOR) 1대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 방송용녹음기(TAPE RECOR 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정	시 설 · 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p>⑦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p> <p>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p> <p>⑨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p> <p>(2) 스튜디오</p> <p>(가) 기재실 : 30m²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① 베타캠 고화질카메라(BETACAM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p> <p>② 조명기기(LIGHT, 1KW이상) 3대 이상</p> <p>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p> <p>(3) 방송실습제작실</p> <p>(가) 편집실</p> <p>① 기재실 : 30m²이상</p> <p>② 설비 및 교구</p> <p>㉠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p> <p>㉡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CONSOL) 1대</p> <p>㉢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BETACAM) 1:1 2대 이상</p> <p>㉣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PROCESSOR) 1대 이상</p> <p>㉤ 방송용 색상보정기 (COLORCORRECTOR) 1대 이상</p> <p>㉥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p>(나) 녹음실</p> <p>① 기재실 : 30m²이상</p>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p>㉠ 녹음조정실 : 30㎡ 이상 ㉡ 녹음 스튜디오 : 30㎡ 이상</p> <p>② 설비 및 교구</p> <p>㉠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GRAPHIC) 1대 ㉨ MULTI TRACK RECORDER 1대 ㉩ CASSETTE DECK 1대 ㉪ COMPACT DISK 1대 ㉫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TABLE) 1대</p> <p>(다) 야외 녹화장비</p> <p>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③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p>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종합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함</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 방송제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4) 아나운싱·리포터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p> <p>(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p> <p>(나) 실습실 90㎡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편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p>(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 시설 ② 기재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3대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3대 이상 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p>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각3대 이상 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1대 ④ 복호기(DECORDER) 1대이상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AMP) 1대 ⑥ 음향분배기(AUDIOO DIVIDERAMP) 1대 ⑦ 칼라화면발생기(PATIERNGENE RATOR) 1대 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 채널혼합기 1대 ⑪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⑭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관 광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캐릭터	가. 시설 (1) 실습실 : 60m ²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간호 보조 기술	44. 간 호 조무사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과도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10종 40개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20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셀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영 사무 관리	45. 주 산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 예	46. 국 악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2)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기 예	47. 서 예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범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꽃기예, 꽃꽂이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패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만 화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연 극, 모 델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모델, 연극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마 술, (매 직)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거울 (2) 오디오(20W 이상)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기 예		(3) 마술도구 5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실 용 음 악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오디오(100W 이상) 1대 이상 (2) 미디프로세서(반주기) 1대 이상 (3) 필요한 악기 5대 이상	
			53. 성 악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2) 피아노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현대무용, 전통무용	가. 시 설 (1) 무용실 : 60㎡ 이상 (2) 탈의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바 둑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학교교과 교육학원 · 평생직업 교육학원	독서실	독서실	56. 독서실	가. 시 설 (1) 열람실 : 시지역 : 120㎡ 이상 기타지역 : 60㎡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 평생작업 교육학원	독서실	독서실		<p>나. 설 비</p> <p>(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 세로58cm이상)</p> <p>(2) 남·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별표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제2조의5제2항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210㎡이상 나. 보건실 : 33㎡이상 다. 휴게실 : 66㎡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이상(단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기숙사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예정인원×4㎡ 이상 [단,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용예정인원 X0.4㎡이상(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table border="1" data-bbox="456 1050 1434 1379"> <thead> <tr> <th>급식학생수</th> <th>면적</th> </tr> </thead> <tbody> <tr><td>50인 이하</td><td>14㎡</td></tr> <tr><td>51인~100인</td><td>14㎡+0.14㎡×(급식학생수-50)</td></tr> <tr><td>101인~150인</td><td>21㎡+0.14㎡×(급식학생수-100)</td></tr> <tr><td>151인~200인</td><td>28㎡+0.14㎡×(급식학생수-150)</td></tr> <tr><td>201인~250인</td><td>35㎡+0.14㎡×(급식학생수-200)</td></tr> <tr><td>251인~300인</td><td>42㎡+0.14㎡×(급식학생수-250)</td></tr> <tr><td>301인~600인</td><td>49㎡+0.05㎡×(급식학생수-300)</td></tr> <tr><td>601인~900인</td><td>64㎡+0.04㎡×(급식학생수-600)</td></tr> <tr><td>901인~1,200인</td><td>76㎡+0.04㎡×(급식학생수-900)</td></tr> <tr><td>1,201인~1,500인</td><td>88㎡+0.04㎡×(급식학생수-1,200)</td></tr> <tr><td>1,501인이상</td><td>100㎡+0.02㎡×(급식학생수-1,500)</td></tr> </tbody> </table> 2) 시설·설비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56 1424 1434 1877">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배수설비</td> <td>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2. 가열설비</td> <td>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td> </tr> <tr> <td>3. 환기·조명설비</td> <td>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td> </tr> <tr> <td>4. 세척설비</td> <td>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5. 방충·방서 등 설비</td> <td>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td> </tr> <tr> <td>6. 기타 시설·설비</td> <td>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급식학생수	면적	50인 이하	14㎡	51인~100인	14㎡+0.14㎡×(급식학생수-50)	101인~150인	21㎡+0.14㎡×(급식학생수-100)	151인~200인	28㎡+0.14㎡×(급식학생수-150)	201인~250인	35㎡+0.14㎡×(급식학생수-200)	251인~300인	42㎡+0.14㎡×(급식학생수-250)	301인~600인	49㎡+0.05㎡×(급식학생수-300)	601인~900인	64㎡+0.04㎡×(급식학생수-600)	901인~1,200인	76㎡+0.04㎡×(급식학생수-900)	1,201인~1,500인	88㎡+0.04㎡×(급식학생수-1,200)	1,501인이상	100㎡+0.02㎡×(급식학생수-1,500)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식학생수	면적																																							
50인 이하	14㎡																																							
51인~100인	14㎡+0.14㎡×(급식학생수-50)																																							
101인~150인	21㎡+0.14㎡×(급식학생수-100)																																							
151인~200인	28㎡+0.14㎡×(급식학생수-150)																																							
201인~250인	35㎡+0.14㎡×(급식학생수-200)																																							
251인~300인	42㎡+0.14㎡×(급식학생수-250)																																							
301인~600인	49㎡+0.05㎡×(급식학생수-300)																																							
601인~900인	64㎡+0.04㎡×(급식학생수-600)																																							
901인~1,200인	76㎡+0.04㎡×(급식학생수-900)																																							
1,201인~1,500인	88㎡+0.04㎡×(급식학생수-1,200)																																							
1,501인이상	100㎡+0.02㎡×(급식학생수-1,500)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급식시설	3) 기구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43 257 790 286">품목</th> <th data-bbox="790 257 1457 286">비고</th> </tr> </thead> </table>	품목	비고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cm 내지 90cm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용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권장사항(100kg·10kg 및 1kg용 각 1대)		
	10. 계량컵	권장사항(1개이상)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권장사항(각 1개)		
	12. 조리종사자용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권장사항(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나. 식품보관설			
	1) 시설·설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43 1456 790 1478">품목</th> <th data-bbox="790 1456 1457 1478">비고</th> </tr> </thead> </table>	품목	비고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7. 온·습도계			
	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 기기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습도계			
	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 기기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인원 x 1/2 x 1m ²)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용예정인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의3 제 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 줄 것
6.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5]**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2조의3제5호 관련)****1.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교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p>
<p>제2조(시설기준) ①법 제 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p> <p>②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 10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제 10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p> <p>③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p> <p>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p>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p>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영 제9조제1항제 6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신 설>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의2(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 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제 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 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

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신 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 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범 재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 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 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 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의2제 1항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 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제5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

<신 설>

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②영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은 별표 3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
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
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
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
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
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
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
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
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
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
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
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영 제 1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2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 -----

 -----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

②제1항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학원의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원의 교습시간)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삭 제>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법 제 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
 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교
 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등) ①학원의설립·운
 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
 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
 일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②-----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

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영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

관계법령 발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는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